

●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고 제2023-4호

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의 제·개정 절차 및 공포에 관한 규칙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0월 06일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」 내에서의 약칭을 ‘수사처’에서 ‘공수처’로, ‘수사처검사’에서 ‘검사’로, ‘수사처수사관’에서 ‘수사관’으로 변경하여 기관 내 약칭을 일원화하고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의 기능 및 역할 등을 고려하여 수사부가 수사과보다 우선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순서를 배치·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의견제출

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운영지원담당관실)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인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13809)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운영지원
담당관실

- 전자우편 : dnyj23@korea.kr

- 팩스 : (02)6320-0259

3. 그 밖의 사항

개정 규칙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운영지원담당관실[(02)6320-0281]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개정 규칙안의 상세내용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홈페이지(<http://www.cio.go.kr>) <법령정보 - 입법·행정예고>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